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
|------|------|
| 의안번호 | 1245 |
|------|------|

제안년월일 : 2023년 09월 04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정준호 의원이 2023년 5월 23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6)과 임춘대 의원이 2023년 8월 14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8)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9. 4)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한편,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59조).
-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농안법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전연도’를 ‘전년도’로 정정함(안 제37조제1항).
-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을 유통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
-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변경함(안 제59조제8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4조, 제59조제1항 중 “공사 사장”을 “공사”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2조 제5항, 제14조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37조제1항의 “전연도”를 “전년도”로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도매시장”을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 시장”으로, “한다”를 “하며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제8호의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법인의 관리) ①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u>10일</u>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이하 “가락동도매시장 등”이라 한다)은 <u>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u>(이하 “<u>공사</u>”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하며 <u>공사</u>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5조(법인의 관리) ① ----- ----- ---14일----- ----- ----- ----- ----- ----- ----- 서울특 별시농수산물공사----- “<u>공사</u>” ----- <u>공사</u>는 -----.</p> |
| <p>② (생략)</p> <p>제12조(허가·신고) ① (생략)</p> <p>②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은 <u>허가일로</u> 부터 5년에 해당되는 월 말일로 한다.</p> |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허가·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5년 이상 <u>10년 이하의 범위</u>로 한다.</p> |
| <p>③ ~ ④ (생략)</p> <p>⑤ 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u>10일</u>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14일</u> ----- -----.</p> |
| <p>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u>10일</u>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도매시장 등은 <u>공사</u>사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u>공사</u>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1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 ----- ----- <u>14일</u> ----- ----- ----- <u>공사를</u> ----- <u>공사</u>는 -----.</p> |
| <p>제37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법인</p> | <p>제37조(출하자 손실보전금) -----</p> |

| 현행 | 개정안 |
|---|--|
| <p>이나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u>전년도</u>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p> | <p>----- ----- <u>전년도</u> ----- ----- -----.</p> |
| <p>② ~ ④ (생략)</p> <p>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u>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 <u>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u> ----- ----- ----- 하며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p>제40조(거래단위) ① <u>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u></p> | <p>제40조(거래단위) <u>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u></p> |
| <p>② <u>도축 부산물은 생체 또는 지방이 포함된 고기의 중량을 기준한 품목별 등급을 설정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구분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거래할 수 있다.</u></p> | |
| <p>제59조(권한의 위탁) <u>가락동도매시장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u></p> | <p>제59조(권한의 위탁) ----- ----- ----- <u>공사에</u> -----.</p> |

| 현행 | 개정안 |
|--|---|
| <p>1호 ~ 7호 (생략)</p> <p>8. 제13조에 따른 중도매업 <u>재허가</u>에 관한 사항</p> <p>9호 ~ 12호 (생략)</p> | <p>1호 ~ 7호 (현행과 같음)</p> <p>8. ----- <u>갱신허가</u>에 관한 사항</p> <p>9호 ~ 12호 (현행과 같음)</p> |